

안내 자료 (Fact sheet)

미용 치료 – 위생 기준 (Beauty treatment - hygiene standards)

미용사들은 다양한 시술을 수행하며 이중 다수가 ‘피부 침투’에 연관됩니다. ‘피부 침투’는 감염 위험을 수반하므로 피부 침투가 수행되는 시설과 시술은 공공 보건 규정 2012 를 준수해야 합니다.

본 안내 자료 소개 (About this fact sheet)

본 안내자료는 피부 미용사들과 미용 치료 종사자들이 피부 침투에 관련된 시술을 수행할 때 양호한 감염 관리 업무를 채택하도록 돕기 위해 NSW 보건부가 개발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피부 미용사들이 공공보건규정 2012 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질병의 확산도 예방할 것입니다.

피부 침투에 관련된 미용 치료 시술은 제모 (레이저 제모 제외), 바늘을 사용한 흑여드름 제거, 미세박피술, 더마 롤러, 각피 절단, 면도날 스크레이핑 및 미용 문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
피부 침투에 관련된 시술은 피부장벽이 찢어질 때 미생물 (세균)이 몸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을 전염시킬 위험이 더욱 크게 됩니다. 피부에 침투하는 더러운 기구에 있는 미생물은 C 형 및 B 형 간염 등의 질환을 발생시켰습니다.

시설 – 등록, 구조 및 재료 (Premises – registration, construction and materials)

- 약싱을 비롯한 피부 침투 시술을 수행하는 모든 미용 치료사들은 시의회에 **반드시** 등록해야 한다. 통보 양식은 NSW 보건부 공공보건법규 웹페이지 www.health.nsw.gov.au/phact 에서 가능
- 시설 구조는 시의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
- 시설 내 모든 표면의 마감 칠은 쉽게 청소가 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
-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
- 조명이 적절하고 통풍이 양호해야 한다
- 시설은 아래 사항을 **반드시** 적절하게 구비해야 한다
 - 청결하고 따뜻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손세척 세면대. (손세척 세면대는 치료 장소에 위치해야 된다)
 - 장비 세척을 위한 청결하고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별도의 싱크대. (청결한 곳이 제공되어야 하며 더러운 곳은 청결한 곳과 분리되어야 한다)
 - 액체 비누 (혹은 알코올 기반의 손 세정제)
 - 일회용 타월 혹은 자동 핸드 드라이어
 - 시설에서 수행되는 피부 시술을 위해 적절한 일회용 장갑, 청결한 리넨 및 가운 혹은 앞치마
 - 쓰레기통

장비 (Equipment)

- 시설의 모든 장비는 **반드시**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이며 사용 후에는 청소하고 건조시켜 청결하고 건조한 조건에 보관한다
- 재사용 가능한 품목을 현장에서 소독할 경우 **반드시** AS 2182-1998 소독기- 스팀- 벤치톱을 준수하는 벤치톱 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해야 한다. (소독기를 사용할 때는 **반드시** 벤치톱 소독기 작동 훈련을 적절하게 받은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)
- 소독은 **반드시** AS/NZS 4815:2006 *오피스 기반 보건 시설- 재사용 가능한 의료 및 수술 도구 및 장비의 재처리, 그리고 관련 환경 유지*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
- 장비는 벤치톱 소독기 ('기구 소독과 공공 보건 규정 2012 준수 방법' 참조)로 처리하기 이전에 **반드시** 철저히 세척한다 (즉, 문지르기, 기구 세척기 그리고/혹은 초음파 세척기 사용)
- 모든 도구는 벤치톱 소독기로 처리하기 이전에 **반드시** 싸서 패키지 상태로 해야 한다. 이를 통해 소독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 시에 팩 내용물을 무균상태로 꺼낼 수 있다. 이러한 요구사항에 예외가 되는 것은 품목을 벤치톱 소독기로 처리한 직후에 사용할 경우이다.
- 벤치톱 소독기는 주기 변수 (즉, 온도, 압력, 시간)를 기록하기 위해 **반드시** 인쇄기를 갖추어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클래스 4, 5 혹은 6 화학 지시제를 각 패키지에 넣고 (적재 시 마다)/혹은 주기 변수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
- 눈금 측정 혹은 검증을 받기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, 클래스 5 나 6 의 화학 지시제가 **반드시** 모든 도구 패키지 (적재 시마다)에 들어 있거나 소독처리 챌린지 장치가 **반드시** 적재 시마다 들어가야 한다
- 세척 및 소독이 곤란한 장비는 한 번만 사용하고 폐기해야 한다 (오직 일회용)
- 바늘이 피부 침투 시술에 사용될 경우 **반드시** 일회만 사용하고 날카로운 물품용 컨테이너에 폐기해야 한다. 이 컨테이너는 AS/NZS 4261:1994 *인간과 동물 의료 적용에 사용되는 날카로운 물품 수집을 위한 재사용 가능한 컨테이너* 혹은 AS 4031 - 1992 *보건 분야에 사용되는 날카로운 의료 용품 수집을 위한 재사용 불가 컨테이너*를 준수해야 한다
- 피부 침투 시술에 사용하지만 피부를 침투하지 않는 품목은 **반드시** 철저히 청소하여 청결한 조건에 보관해야 한다
- 시술 중에 덮거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타월 혹은 기타 리넨 유형은 **반드시** 각 치료 시작 시에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. 리넨은 세제와 온수로 세척되어야 한다

위생 절차 (Hygiene procedures)

- 시설은 **반드시**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
- 작업대와 같은 치료 구역은 매환자 마다 청소해야 하고/하거나 치료 표면을 청결한 덮개로 덮어야 한다
-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액체, 크림, 잉크 및 색소는 **반드시** 일회용 용기에 붓고 일회용 도구는 **반드시** 시술을 받는 각 사람마다 사용되어야 한다

- 왁스가 제모를 위해 사용될 경우 왁스 및 왁스 적용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 (예: 주걱)는 **반드시** 시술을 마친 직후에 처분해야 한다 (두 번 담그기 금지)
- 소독한 패키지는 치료 직전에 개봉해야 한다
- 소독한 장비 중 피부를 직접 침투하는 부분은 만지지 않아야 한다. (소독한 장비를 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소독한 삽입 튜브, 포장된 알코올 소독 면봉, 소독된 건조 면봉 혹은 소독된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)

미용사를 위한 개인 위생 (Personal hygiene for beauticians)

- 피부 침투 시술 동안에 미용사는 청결한 가운 혹은 앞치마 및 일회용 장갑을 **반드시** 착용해야 한다 (시술 동안에 체액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한 왁스를 사용하는 제모에 적용되는 시술은 제외)
- 손세척은 1) 매 고객을 보기 전과 후에, 2) 시술 전과 후에, 3) 신체 내용물에 노출된 후에, 4) 고객의 주변을 만진 후에, 5) 장갑을 벗은 후에 실행해야 한다
- 손세척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*손 위생 오스트레일리아* 웹사이트 참조.
<http://www.hha.org.au/AboutHandHygiene.aspx>
- 베임 혹은 상처는 봉인된 방수 밴드로 붙여야 한다

기타 요구사항 (Other requirements)

- 국소마취가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고객이 지역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미용실로 가져와도 상관이 없다. 이 제품은 해당 고객을 위해서만 적용되거나 사용될 수도 있다. 미용실은 국소마취 크림 (예: Lignocaine, Emla 크림, Medijel, Xylocaine)을 여하한 경우에도 공급할 수 없다
- 별표 4, 처방전 약품 (예: 주사)은 의료 전문인에 의해서만 공급 및 표찰 부착이 될 수 있으며 의료 전문인 혹은 간호사만이 투약할 수 있다
- 소독 기록은 **반드시** 12개월 동안 보관하며 표시 내용은 (a) 각 물품이 소독된 시간 및 날짜, (b) 물품이 소독된 소요 시간 및 벤치톱 소독기의 온도 및 압력이다
- 임상/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(예: 혈액 혹은 체액 등의 폐기물)은 임상 폐기물 쓰레기통에 처분해야 하며 면허 소유 폐기물 계약업체가 수거해야 한다 (지역 시의회 참조)

규정 비준수에 대한 요금 및 벌금 (Fees and penalties for non-compliance)

- 공공보건법 2010 및 공공보건규정 2012 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벌금 통보가 발행될 수 있다. 벌금 범위는 개인은 \$110 - \$1100, 기업은 \$220 - \$2200 이다. 최대 벌금은 기소될 경우 더 높게 되며 일일 벌금이 포함될 수 있다.
- 행정 요금 범위는 \$250 - \$270 이며 개선 통보 혹은 금지 명령 발행이 필요할 경우 부과된다
- 금지 명령과 관련하여 시설의 재검사는 시설 점유자에게, 최소 30 분, 최대 2 시간 (교통 소요시간 제외)으로 시간당 \$250 의 요금이 부과된다

추가 정보 (Where to go for further information)

피부 침투 시술 산업을 위한 NSW 보건부 웹사이트 방문

<http://www.health.nsw.gov.au/environment/skinpenetration/Pages/default.aspx>

NSW 보건부 공공보건 법규 웹페이지 방문:

www.health.nsw.gov.au/phact

해당 지역 시의회 혹은 보건소 연락

NSW 의 보건소 – 연락처 정보 (아래 참조)